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완화...최대지급액 상향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소득 및 재산 요건도 완화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까지 받아...조기 지급 도입

자녀장려금 지급액·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

내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급 요건을 폐지 및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휴직 후 복귀한 중·중견기업 근로자에 세제를 지원해 각종 복지 제도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부처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 요건(30

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한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홀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조4000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늘린다. 단독가구는 85

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홀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반기별로 추정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9월 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씩 인상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신청도 허용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년부터 적용된다.

◇일용근로자 세 부담 완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낮춘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8%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하면 종결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체계 지원 =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단, 임원 및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기업에 대해선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에서 빼준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년부터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 공제 = 남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후 복귀한 경우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10%, 중견기업이 5%다. 단,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하며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엔 추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년부터 적용하며 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 수조차 보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기존 전기차에서 수조차 대여업자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전기차 또는 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2019 금융재정 조세	
중부세 개편	공정시장가격 비율 80% → 연 5%p씩 인상(2019년 85%) 주택 및 종합자산 토지 세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 부담 상향 150% → 200% 3주택 이상 150% → 300% 중부세 분납 500만원 초과(2개월 분납) → 250만원 초과(6개월) ※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과세 제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 범위 명확화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 개별비세 감면 - 10년 넘은 경유차 폐차 후 구매 개세세 70% 감면 - 사실혼 포함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납부면세 기준 인하 - 기준금액 24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입국정면세점 도입	유용·단련주점,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 중소·중견기업 한정, 담배 및 경역대상품목 등은 제한
정병내외준비비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시행, 사업자 등록 - 월 40만원, 복부 기간 24개월 한도 - 분리과세 선택하거나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 등 제고 1~1000점으로 전환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기명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지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지원 재산소득인 가구원 2억원 미만 재산 1.4% 이상시 지급액 50% 감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명점 우대수수료 적용 5~10억원: 1.4% 10~30억원: 1.6%
연매출 500억원 이하 기명점 수수료를 인하 유도 30~100억원: 0.3%p인하 100~500억원: 0.22%p인하	

조차를 50% 이상 보유할 경우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에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 100% 지급...9월부터 7세까지 대상 확대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9월부터 대상을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난임부부수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의 의료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등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

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나이가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는 부담도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우선 난임부부수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임신 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 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금 비율을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

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000여명(8만→11만7000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적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난임부부수술비 지원 대상 늘고 1세미만 의료비↓
500가구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초등생 다함께돌봄 센터 150개 신설 등 돌봄 강화**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설치 여부가 재량 사항이었다.

올해 10월말 중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

다.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를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 확대, 부정수급 등 벌을 위반했을 때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자동 조정된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 가용공간을 활용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키트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자체·법인 설치시설 40곳과 개인 설치시설 800곳 등이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산입범위 확대

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중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해외여행 돌아올때 면세쇼핑하세요”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쇼핑 가능

내년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쇼핑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의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6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시범 평가를 시행한 후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쇼핑물품을 수령해 일정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내린 뒤에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내년 4월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 '조기인상'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6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라

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2019년 6000원에서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내년 4월 인상에 이어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300만명, 2021년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씩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51만개인 노인일자리에는 내년 10만개 늘어나 61만개가 된다.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

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활동수당을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 안심 병동이 늘어난다.